

인권·성평등센터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가톨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인권·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등 예방 및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에 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2. 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교육·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③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인권침해 등”이란 차별행위,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⑤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중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 밖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

⑥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⑦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⑧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사실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⑨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⑩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 ⑪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신고 및 접수된 내용 또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⑫ “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은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교법인 성모학원 정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당사자의 일방만이 본 대학교의 구성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인권교육

- 제4조(인권침해 등 예방교육)**
- ① 총장은 본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및 2차 피해를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제공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신규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본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제공 등 교육 시기와 방법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와 구제

- 제5조(상담 및 신고)**
-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 그 외 인권침해 등 피해 신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심의 후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6조(신고의 각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하고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5조 제3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4. 이미 본 대학교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처리가 종결된 사건인 경우
5. 피해자가 센터의 조사 참여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6.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
7. 당사자 간 중재에 의해 종결된 사건으로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익명으로 진정된 사건으로서 센터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됨이 명백하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사건 심의 이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 행위 즉시 중지
2. 피해자와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 및 접근, 연락 금지
3. 인권침해 등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직원의 직무 배제
4.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동아리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를 퇴거, 격리 등의 공간분리
5. 그 밖에 피해자나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안전 및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신고인과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피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경우 센터장은 이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총장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가 요청될 때 이를 징계 가중 사유로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조사의 개시) ① 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③ 신고 접수가 되면 센터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성평등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중재) ① 신고인이 중재를 요청할 경우 혹은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이 중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신고 및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인권·성평등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인권·성평등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구성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인권 문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본 대학교 구성원 및 외부전문가 중 조사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장은 당사자의 신분과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조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을 간사로 둘 수 있으며, 조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⑤ 조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조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해당 사건처리의 종결일까지로 한다.

⑥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⑦ 이 지침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조사위원회 위원은 인권·성평등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조사위원장 직무) ①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조사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 임무와 권한) 조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의 조사개시, 당사자의 소환 일정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의 사전고지
2.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3.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인 등으로부터 진술 청취
4.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인,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5.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인,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6.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총장에게 보고
7.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조사위원회 회의) ① 조사위원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간사가 회의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사자가 소속된 학과나 부서의 동료 교수, 동료 직원 또는 학생인 경우
 5.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사건 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피신청서와 사유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기피가 인정된 경우 해당 위원은 해촉되며, 이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보궐위원의 위촉을 총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신고가 기각된 경우 제7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효력은 곧바로 상실된다.

제16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에 앞선 모든 관련 절차는 무효로 한다.

- ②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철회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센터장은 해당 사건의 관련 기록 원본이나 사본 또는 전자파일을 센터에 보관해야 한다.

제17조(인권·성평등심의위원회 회부) ① 센터장은 조사위원장의 심의 요청이나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권·성평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심의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장은 중재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인권 문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업무

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본 대학교 구성원 및 외부전문가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교 처장단, 센터운영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위원, 센터장은 심의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 심의위원장은 당사자의 신분과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심의위원은 심의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학생위원은 학생과 관련된 사안에만 참석하고, 총 재적위원의 범위에서 총학생회의 추천과 심의위원장의 제청으로 2인을 위촉하되 남녀 각 1인을 위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을 간사로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⑦ 심의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해당 사건처리의 종결일까지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 당사자에게는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위원회 업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를 위한 사항
3. 인권침해 등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 사건의 재심의를 관한 사항
6. 제1호의 사건 조사가 미진한 경우, 보충 조사 요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20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 등의 사건처리에 관한 심의 요청 또는 보고받은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사건처리에 관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질의응답을 위해 조사위원 중 대표성을 가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질의응답 후 조사위원은 퇴장한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간사가 회의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
- ⑤ 회의록은 보안문서 형태의 전자문서로 회의 참석 위원에게만 확인·공개한다. 다만, 회의록을 확인한 위원은 해당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이의신청)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별 각 1회에 한정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재심의) 심의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요청 및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를 첨부하여 징계권자 혹은 징계제청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피신고인에게 법령 및 학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피신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제9조 제3항이 인정된 경우
5. 누구라도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등 결정과 함께 당사자와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비용 발생 시에는 당사자와 관계부서의 장이 부담한다.

1. 인권침해 등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3. 인권·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4. 사회봉사활동
5. 피해자에 대한 일정 기간 접근 금지 및 분리 조치
6. 기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장은 피신고인이 본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피신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자의 소속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장이 징계권자 혹은 징계제청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징계처리의 결정 및 징계가 집행 완료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의 자퇴나 휴학, 사직 또는 휴직 등을 승인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요청 이전에도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등의 행위로 인정된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하도록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하고 그 이행 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설명하여야 한다.

제26조(조치 실행 지도·감독) 센터장은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당사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 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센터에 미리 통지하고 조사절차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③ 제3자인 신고인, 피해자의 대리인 등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④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 당사자는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 권리가 있다.

제 4 장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2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상담·조사 및 처리결과 등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알게 된 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센터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실을 센터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은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 녹화, 촬영이 가능한 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회의에서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의의 간사는 회의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 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를 소지할 수 있다.

제29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① 센터는 사건의 원활한 상담, 조사, 처리를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당사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나 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사건 진술서, 증거자료 등의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학내 징계위원회, 사건처리에 관련된 학내 부서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3. 경찰, 검찰

③ 본인이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나 위원회 또는 기관은 제28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정보공개에의 청구) ① 당사자는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사건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개를 거부하거나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제28조의 비밀유지의 의무에 저촉되는 경우
2. 공개할 경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개할 경우 다른 사람의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개할 경우 센터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1조(2차 피해의 방지)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과정 및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신고인 또는 가해자, 그 소속 부서 등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2차 피해의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내 관계 부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피해자의 상담, 치료,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불이익 금지) 이 지침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학습권, 노동권, 신분이나 처우 등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 칙

제3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과 본 대학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03월 15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센터에서 처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